

「이태원 사고」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2. 6. 1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6. 7.
- 상정일자: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세무과장 김 형 식)

가. 제안이유

- 2022.10.29.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구세)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감면대상자 :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- 감면세목 : 재산세, 주민세(사업소분)

○ 세목별 감면내역('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한함)

1)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2) 주민세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[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]을 면제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○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,

○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, 대구광역시에서 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어,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려는 것임.

○ 「이태원 사고」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